

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(제14조제6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, 그 더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뒤에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의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.
- 마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로서 다음의 가중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(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)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
 - 1) 가중 사유
 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2) 감경 사유
 - 가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다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 - 라)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바.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사.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가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	법 제17조제4항 제1호	등록취소			
나.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	법 제17조제4항 제2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등록취소	
다. 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	법 제17조제4항 제3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등록취소	
라.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조제4항 제4호	시정명령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등록취소
마. 법 제13조제1항의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조제4항 제5호	시정명령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등록취소
바.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	법 제17조제4항 제6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등록취소	
사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대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조제4항 제7호	시정명령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등록취소

아.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	법 제17조제4항 제8호	업무정지 6개월	등록취소
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